고양시 영상기업 활용 인센티브 사업 관리지침

제정 2019. 2. 1. 개정 2020. 2. 4. 개정 2021. 2. 10. 개정 2021. 8. 27. 개정 2022. 3. 7. 개정 2023. 3. 7.

제 1 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고양산업진흥원(이하 "진흥원" 이라 한다) 고양시 영상기업 활용 인센티브 사업(이하 "지원사업" 이라 한다) 의 원활한 시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인센티브" 라 함은 영화·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사의 고양시 내 제작서비스사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유인 혹은 조성책을 말한다.
- 2. "고양시 영상기업 활용 인센티브 지원"이라 함은 고양시 제작서비스사 활용 촉진, 고양시 영상산업육성 및 고양시 홍보 등을 위해 진흥원이 국내 영상 콘텐츠 제작사와 고양 영상제작 현력기업 가 거래 금액의 일부를 확급해주는 것을 말한다.
- 3. "국내 영상 콘텐츠 제작사"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거, 영화·TV프로그램(예능, 드라마, 다큐 등)· OTT 상영작품(오리지널 시리즈, 영화, 예능 등)을 제작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.
- 4. "OTT 상영작품"이라 함은 구독형 또는 유료형 OTT 플랫폼과 정식 계약을 맺고 등록한 작품을 말한다.
- 5. "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" 이라 함은 진흥원 영상제작 협력기업 DB에 등록된 세트, 스튜디오, 미술, 촬영, 조명, 음향, 의상, 분장, 특수효과, 편집, CG, 음악, 녹음, 현상, 보조출연, 스턴트 등 제작서비스 분야의 고양시 소재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.
- 6. "전담기관"이라 함은 지원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관리를 전담하는 진흥원을 말한다.
- 7. "주관기관"이라 함은 본 지원사업을 신청한 국내 영상 콘텐츠 제작사를 말한다.
- 8. "지원금"이라 함은 본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이 주관기관 및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의 장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.
- 9. "환수금"이라 함은 주관기관 및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의 장이 제재조치 등에 따라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전답기관의 장에게 납부, 변제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.
- ②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영상진흥기본법.
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정의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지침은 진흥원이 시행하는 고양시 영상기업 활용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 적용한다.

제4조(관리지침 변경) 전담기관의 장은 본 지원사업의 시행에 있어서, 필요한 경우 본 관리지침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된 지침에 관해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5조(지원대상 및 분야) ① 지원대상은 국내 영상 콘텐츠 제작사와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이다. ② 지원부야는 국내에서 상영(방영)되는 영화 TV 프로그램 (OTT 시리즈이며, 다음 각 호를 만족하여야 하다.

- 1. 공고일 이전년도 12월 1일부터 공고일 당해년도 11월 15일 사이 상영(방영)되는 영화, TV 프로그램, OTT 시리즈
- 2. 영화의 경우, 100스크린 이상 상영되는 작품
- 3. TV 프로그램의 경우, 공중파, 종편, 케이블 채널을 통해 방영되는 작품
- 4. OTT 시리즈의 경우, 국내외 OTT 플랫폼을 통해 공개되는 오리지절 시리즈 및 작품
- 5. 연속물(예능, 드라마 등)은 시리즈 전체를 한 작품으로 인정하며, 후속 시리즈의 경우는 다른 작품으로 인정
- ③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목적달성과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- 제6조(지원 내용 및 규모) ① 지원내용은 주관기관과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 간 거래금액에 대한 일부 환급이며, 카메라와 장비 등 자산성격의 물품의 구매비와 수리비는 거래금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.
- ② 지원규모는 거래금액의 20%로 하며, 이를 주관기관과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에 1:1로 균등 배분한다. 단 주관기관과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이 한 작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천만 원이며, 연간 지원 한도는 3천만 원으로 한다.
- ③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신청률과 당해년도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지원규모와 지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7조(지원조건) ① 주관기관의 작품이 다음 각 호 조건을 모두 만족할 시 정산 심사결과에 의거, 분기별 인센티브 총 지원금 한도 내에서 심사결과가 높은 순으로 지원한다.

- 1. 신청작품의 제작과 관련하여 크랭크인 날짜 이후부터 대중에게 공개된 상영일(개봉·방영· OTT 업로드) 사이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과 거래내역이 증빙 가능한 경우
- 2. 신청작품 제작을 위한 거래임이 증빙되더라도, 해당 차수 공고 마감일까지 지출 완료된 사항만 작성 가능
- 3. 신청작품의 제작과 관련하여, 거래한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의 소재지가 거래 당시 및 접수일 기준 고양시인 경우 (거래 증빙 확인)
- 4. 신청작품의 제작과 관련하여 거래한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의 현 소재지가 접수일 기준 고양시인 경우
- 5.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과의 거래증빙 및 지워사업의 제출서류 등 전담기관이 요구한 자료를

제출한 경우

- 6. 지원 선정 통보를 받은 주관기관이 지원금 교부신청서 제출 전까지 사업 신청서에 명기한 콘텐츠를 전담기관에 제공한 경우
- ②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목적달성과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새로 정할 수 있다.
- 제8조(참여제한) ①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신청일 또는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, 진흥원 및 지원사업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사실이 있는 주관기관과 대표자 및 책임자에 대하여 참여를 제한함 수 있다.
- ②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목적달성과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 시행에 대한 참여제한 대상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 2 장 사업의 관리체계

제9조(전담기관) ①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시행한다.

- 1. 신청서를 포함한 지원사업 제출서류 접수
- 2. 신청작품의 제출서류 검토 및 지원비율, 금액산정 등 지원사업 진행
- 3. 지원금 지급 또는 환수에 대한 업무
- 4.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- ②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.
- 1. 사업시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종합관리
- 2.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의 수급 확인
- 3. 지원금 지급·환수 및 기타 주관기관 제재 조치에 관한 사항
- 4. 설문조사 시행 및 결과보고
- 5. 기타 공정한 사업시행 및 관리를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0조(주관기관) ①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.

- 1. 지원사업 신청 및 정산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제출
- 2. 신청서에 명기한 콘텐츠의 제공 및 공공목적 활용 보장
- 3.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에 대한 부담
- 4. 보안에 관한 종합관리 및 관계법령 준수

제 3 장 지원신청

제11조(사업공고) 전담기관의 장이 공고하는 지원계획에는 당해 지원사업의 지원분야, 지원규모,

지원조건, 신청자격,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,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선과 이메일 등을 통해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.

- 제12조(지원신청) ① 본 지원사업은 지정된 서식에 따라 주관기관인 제작사가 신청하여야 한다.
- ② 다수의 제작사가 참여한 공동제작물의 경우 거래증빙이 중복되지 않는 한 제작사 별로 신청 가능하다. 단 증빙서류(영수증, 계약서 등)에 해당 제작사가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.
- ③ 주관기관,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 중 연간 지원한도를 초과한 기업이 있어도 해당 기업을 제외한 다른 기업들은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.
- 제13조(신청서류) ① 주관기관은 신청서 접수 시 사업 공고문 및 사업 안내서에서 지정하는 양식과 방법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 - 1. 지원사업 신청서
 - 2. 고양시 기업 협업 내역 및 영상관광 콘텐츠 제공 계획
 - 3. 고양시 내 촬영 증빙(해당 시)
 - 4. 친환경 라이프스타일 홍보 장면 건수(해당 시)
 - 5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 - 6. 사업자 등록증
 - 7. 작품 소개 및 기업 소개 자료(자유 양식)
- ②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작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서,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 이용내역서 등의 작성내용을 달리 정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.
- ③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지원사업시행에 관한 필요서류 등을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-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5조 및 제7조의 지원 대상과 조건에 위배되거나 제12조 및 제13조에 위배되는 신청서를 제출한 주관기관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제 4 장 선정심사

- 제14조(심사방법) 선정심사는 주관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서류심사(정량)로 진행되며 심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고양시 기업 활용 정도
- 2. 영상관광 콘텐츠 제공
- 3. 고양시 연관성 및 공공기여
- 4. 가산점
- 제15조(심사기준) ① 심사 점수 60점/110점 이상, 상위 순위의 주관기관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. 단, 동점인 경우 고양시 기업 활용, 영상관광 콘텐츠 제공, 고양시 연관성 및 공공기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한다.

② 심사 세부항목이 모두 동점인 경우, 고양영상제작 협력기업 활용규모(거래액) 순으로 선정한다.

제 5 장 정산심사

- 제16조(정산서류) ①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주관기관은 사업 공고문 및 사업 안내서에서 지정하는 양식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1. 정산서류 제출 공문
- 2.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 거래내역
- 3. 영수증 증빙
- 4. 콘텐츠 제공 내역
- 제17조(정산심사) ①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이 제출한 정산서류를 검토하는 정산심사를 진행한다.
- ② 정산심사 시 인정항목은 고양 영상 제작 협력기업과의 거래액으로 하며 부가세는 제외한다.
- ③ 거래액의 인정기간은 크랭크인 이후부터 상영(방송) 사이로 하는 것이 워칙이나 계약서 또
- 는 영수증에 해당 작품에 대한 거래임이 증빙되는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증빙자료로 인정한다.
- ④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과의 거래증빙을 미제출하거나 제출한 자료가 증빙자료로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, 거래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.
- ⑤ 공동제작물의 경우 증빙자료에 해당 주관기관이 명기되어있어야 한다.
- ⑥ 신청 시 기입하지 않은 거래액은 인정하지 않는다.
- ⑦ 신청시 기재한 내용과 실제 정산시 제출한 내역이 다른 경우, 서류심사(정량)를 재진행하여, 선정여부를 다시 확인 후 통보할 수 있다.

제 6 장 콘텐츠 제공

- 제18조(제공 시기) 주관기관은 지원 선정 결과를 통보를 받은 후, 지원금 교부신청서 제출 전까지 전담기관에 신청서에 명기한 콘텐츠를 제공하여야 한다.
- 제19조(제공 내역) ① 선정된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콘텐츠를 전담기관에 필수 제공해야 한다.
 - 1. 시나리오(2부이상/감독 또는 주연급 배우 1인 이상의 싸인 포함)
 - 2. 홍보용 스틸컷 파일(최소 5컷 이상)
 - 3. 포스터 파일(300 Dpi 이상의 psd 또는 ai 파일)
 - 4. 예고편 영상 파일(HD급 이상의 동영상 파일)
- ② 주관기관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콘텐츠에 대한 추가 제공을 제안할 수 있으며, 콘텐츠 제공 정도에 따라 심사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.
- 1. 고양시 촬영분의 스틸컷 파일

- 2. 영상 VFX 전 · 후 영상
- 3. 배우. 감독의 코멘터리 영상
- 4. 작품에 나온 소품·의상·세트의 일부
- 5. 콘티북, 스토리보드 북
- 6. 기타 고양시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전시 ·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
- ③ 동일한 콘텐츠는 다수 제출 시에도 하나의 콘텐츠로 인정한다.
- ④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 이메일 또는 이동식 저장매체에 담아 우편(방문)으로 제출하며, 실물 콘텐츠는 우편(방문)으로 제출한다.
- 제20조(콘텐츠의 활용) ① 고양시 및 전담기관은 제공받은 콘텐츠를 비상업적 공공의 목적으로만 활용한다. ② 고양시 및 전담기관은 제공받은 콘텐츠를 원작의 목적범위 내에서 약간의 수정과 변형을 가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.

제 7 장 지원금 신청 및 지급

- 제21조(신청방법 및 제출서류) 주관기관과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은 사업공고문 및 사업안내서에서 지정하는 양식을 사용하여 이메일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다.
 - 1. 지원금 신청 공문
 - 2. 지원금 교부 신청서
 - 3. 지원사업 만족도 및 성과
 - 4. 통장 사본
 - 5.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
 - 6. 국세·지방세 납입 증명서
 - 7. 사업자등록증
- 제22조(지원금의 지급) ① 지원금은 분기별 지원규모 내에서 선정심사 결과 상위 순으로 지급한다.
- ② 주관기관과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은 전담기관이 요청한 서류를 2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, 상의를 통해 제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.
- ③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수령한 이후 30일 이내 지원금을 지급한다.
- ④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과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과의 상의를 통해 지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.
- ⑤ 잔여예산이 남을 경우 차순위 기업과의 상의를 통해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 8 장 사후관리

- 제23조(사후관리 및 환수금 정수) ① 주관기관과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의 장 및 책임자는 전담기관이 지원 사업 과정에서 요청하는 내용을 성실히 이해하여야 한다.
- ②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관기관 및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으로부터 지원금을 화수 할 수 있으며, 타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행할 수 있다.
- 1. 압력이나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사실이 드러난 경우
- 2. 신청서나 제출서류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
- 3. 지원 시 이행하기로 한 사실에 대해 중대한 위반을 한 경우
- 4.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전담기관이 요구하는 제출서류 및 기타 추가 요구자료 내용을 누락 시키거나 불성실한 경우
- 5.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을 위반한 경우
- ③ 환수가 결정된 경우 주관기관 및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은 지원금 지급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된 환수액에 대한 이자를 전담기관에 반환하여야 하며, 이자의 이율은 전담기관이 거래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 예금금리를 기준으로 한다.

제 9 장 보칙

- 제24조(면책) 전담기관인 진흥원은 본 사업에 의해 지원되는 영화 및 TV프로그램, OTT시리즈의 제작, 상영(방영)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민·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.
- 제25조(비밀준수) 본 사업의 시행 및 관리·심사 과정에 참여하는 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에 대해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되며, 주관기관은 지원사업에 관련된 자료가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.
- 제26조(적용특례) ① 전담기관은 대외보안을 요하거나 당해 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관리지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② 전담기관은 본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별도의 협약 등을 정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.